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김명철 의원 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장애인 가정의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하여 오산시의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오산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- 다.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- 바.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7조).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1년 8월 31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#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명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573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8월 24일

발의의원 : 김명철 의원

찬성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이상복,  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## □ 제안이유

- 장애인 가정의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하여 오산시의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오산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- 바.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7조).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
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6조, 제9조
 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

##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전기안전관리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말한다.
3. “전기재해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전기재해 예방사업)**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
2. 장애인 가정의 노후 된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
3.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용품 지원
4. 전기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,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,

이를 위하여 시장은 오산시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형태, 세대구성원, 장애유형 및 활동능력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전기재해 지원사업)**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·기자재 또는 인력·비용의 지원
2.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·장비의 지원
3.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6조(사업예산 지원)**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)**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첨】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 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(생략)

##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「전기안전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기안전관리”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·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전기재해”란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
3. ~ 9. (생략)